



# 서울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(참 조)

## 제 목 **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제한 시행 안내**

---

1. 종로구 관광체육과-25445호(2025.06.27.)와 관련입니다.

2.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)에 따라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, 주거환경 보호 및 보행 중심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2025년 7월 1일부터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되며,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, 2026년 1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### □ 북촌 특별관리지역 전세버스 통행금지 시행

- 1) 계도기간 : 2025. 7. 1 ~ 2025.12.31
- 2) 시행기간 : 상시 (토·일요일, 공휴일 포함)
- 3) 제한구역 : 북촌로, 북촌로5길, 창덕궁1길 약 2.3km

※ 붙임자료 참조

4) 과태료부과 시기 : 2026년 1월 1일부터

5) 예외대상 : 제한구역 내 통근버스, 학교버스, 마을버스,  
기타 공적목적 차량 등

6) 단속대상

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

[별표1] 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(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)

구 분	과 태 료		
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
차량 통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	300,000원	400,000원	500,000원

※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의3 제7항 및 「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진흥조례」 제20조

※붙임 : 종로구청 공문 및 관련 붙임 자료 1부. [끝]

※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[www.tourbus.or.kr](http://www.tourbus.or.kr)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
이사장 오성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(전결)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5- 110호 ( 2025.07.01 ) 접수 ( )  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  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